

충청북도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행정문화위원회

전문위원 남범우

충청북도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제 출 자 : 충청북도지사

2.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

- 제출일자 : 2020년 11월 27일
- 회부일자 : 2020년 11월 27일

3. 개정이유

- 방사광가속기의 성공적 구축 기반 마련을 위한 방사광가속기추진지원단 신설 사항과 자율신설기구 운영 관련 성과평가에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4. 주요내용

- 기구 신설 : 방사광가속기추진지원단 (안 제9조의3)
 - 존속기한 : 2022. 12. 31.까지 (경제부지사 소관)
- 방사광가속기추진지원단 분장사무 신설 (안 제9조의3)
 - 방사광가속기 구축 지원에 관한 사항
 - 방사광가속기 기반 신성장 육성 종합전략 수립에 관한 사항
 - 방사광가속기 활용확산 방안 마련 및 홍보에 관한 사항
 - 방사광가속기 기반 산학연 클러스터 구성에 관한 사항

- 자율신설기구 운영 관련 성과평가 조항 신설 (안 제63조)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자율신설기구 성과평가에 필요한 사항 규정
- 소방본부 분장사무 중 현행 업무에 맞게 자구 조정 (안 제14조)

5. 검토의견

금번 개정조례안은 다목적 방사광가속기 구축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하여 방사광가속기추진지원단을 신설하고, 자율신설기구 운영 관련 성과평가에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였으며, 효율성 제고를 위한 분장사무 조정사항을 자치법규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첫째, 신설되는 방사광가속기추진지원단 업무를 경제부지사 분장사무로 조정하고,

둘째, 방사광가속기추진지원단을 신설하고, 방사광가속기추진지원단의 분장사무를 신설하며, 일부 분장사무를 신성장산업국에서 방사광가속기추진지원단으로 이관하고,

셋째, 소방본부 분장사무중 현행업무에 맞게 명칭을 변경하며,

- 도민안전체험관 → 안전체험관, 소방항공구조대 → 소방항공대, 소방종합상황실 → 119종합상황실, 광역119특수구조단 → 119특수구조단

넷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의 2’에 따라 실국을 추가로 설치하는 경우 운영성과를 평가·반영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음.

이는 대규모 국책사업인 다목적방사광가속기 구축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방사광가속기추진지원단을 신설하며 이에 맞게 분장사무를 조정하고, 또한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실·국간의 분장사무 조정 및 소방본부의 명칭변경을 위한 조직 개편안에 대하여 특별한 이견이 없음.

붙임 :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